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6. 8. 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. 2. 10. 박성훈의원 등 15인

나. 회부일자: 2026. 2. 1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35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6. 5. 19.) 상정 · 제안설명
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

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(2026. 5. 20.) 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수정
가결)

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6. 5. 20.) 상정 · 소위심사
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성훈의원)

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조정·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 및 조정·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,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·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2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 성소미)

현행 「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·중재 운영세칙」¹⁾은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·중재 절차에서의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, 구체적으로 ①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²⁾, ②신청인 또는 피신청인

1) 중기부 고시, 제2024-29호

2) 「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·중재 운영세칙」

제11조(대표자의 선정 및 변경)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에게 대표자를

은 대리인을 통하여 조정·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③대리인의 범위를 변호사, 사건의 당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,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한 사업체에 소속된 자,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, ④대리인은 사건의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·중재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되,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도록 함³⁾).

개정안은 하위법령인 고시에서 규정한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,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·중재 운영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다만, 안 제23조의2제2항은 “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변호사로 등록된 자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·자매 또는 소속직원으로 한정”하도록 하고 있으나, 안 제1항은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대리인 선임과 관

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③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·변경통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3) 「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·중재 운영세칙」

제12조(대리인의 선임)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조정·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.

1. 변호사

2. 사건의 당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

3.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한 사업체에 소속된 자

4.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

②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대리인은 사건의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·중재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한다.

련한 조항이 아니므로, 현행 「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·중재 운영세칙」⁴⁾과 같이 조정·중재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대리인을 통해 조정·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별도의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

중소벤처기업부는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·중재 관련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, 조정·중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김원이 위원)

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대표자 선정만을 규정하고 곧바로 대리인의 자격을 정하여 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었는 바 이를 보완하여 수정의결함.

4) 「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·중재 운영세칙」

제11조(대표자의 선정 및 변경)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.

제12조(대리인의 선임)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조정·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음.

7. 심사결과

수정가결

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·자구심사를 거쳤음

※ 심사보고서 붙임서류

1.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2.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5.

제 안 자 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대표자 선정만을 규정하고 곧바로 대리인의 자격을 정하여 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었는 바 이를 보완하여 수정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2제2항).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3조의2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”을 “조정·중재 사건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조정·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대리인은”으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3조의2(대표자 및 대리인) ① 조정·중재 사건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「변호사법」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자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·자매 또는 소속직원으로 한정한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사건의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·중재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한다.</u> <u>④ 그 밖에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.</u>	<u>제23조의2(대표자 및 대리인) ① (개정안과 같음)</u> <u>② 조정·중재 사건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조정·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대리인은 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.</u> <u>③ (개정안과 같음)</u> <u>④ (개정안과 같음)</u>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대표당사자)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.

②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들을 위하여 조정·중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조정·중재 신청의 철회
2. 제25조제6항에 따른 합의

제23조의3(대리인)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1. 「변호사법」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
2. 당사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
3.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

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3조의2(대표당사자)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.</u> <u>②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들을 위하여 조정·중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u> <u>1. 조정·중재 신청의 철회</u> <u>2. 제25조제6항에 따른 합의</u>
<u><신 설></u>	<u>제23조의3(대리인)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</u> <u>1. 「변호사법」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</u> <u>2. 당사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</u> <u>3.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</u>

	<u>인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제2항 을 준용한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